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70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임종득 · 서일준 · 서천호
김기웅 · 강명구 · 한기호
박형수 · 백종현 · 박준태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생략)</p> <p>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3.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